

의안번호	제468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자	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17일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안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8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7일
발의자 : 안치영,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조성태,
박병천

1.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협회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협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소속 관계관
2.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12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
3.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정보 제공과 사회적응 및 직업 교육 지원

4.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지원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지원
8.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9.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제13조(다문화가족에 이해증진)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족해체 예방)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 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의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족의 소통의 장 마련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및 동질감을 형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통번역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화합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3. 관련조문(제12조)

- 결혼이민자등의 생활정보 제공과 사회적응 및 직업 교육 지원(제3호)
-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제8호)
-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제9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다문화가족 통·번역 및 화합증진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나. 추계 결과

-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 : 165,565천원
-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 10,000천원
- 가족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연수 : 9,000천원
-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 : 12,15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 및 시군 매칭 지원

